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5. 13.

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

- 건 명 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-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사유	주소
박*준	1996.03.14.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동 서류를 2024년 5월 9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(폐)	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3길 5(밀성주택)8동 (이하생략)

- 공고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5. 28. (15일간)
-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밀양고용센터 이영의(Tel. 055-350-280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